

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10.2.18>

※제 호			
차대번호(원동기형식)재표기등인정신청서			
※표기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			
신 청 인	상호(명칭)		주 민 (사 업 자) 등록번호
	주 소	(전화번호 :)	
자 동 차	등 록 번 호		차 대 번 호
	차 종 및 차 명		원 동 기 형 식
신청사항	☐ 차대번호신규표기 ☐ 차대번호표기지움·재표기 ☐ 원동기형식신규표기 ☐ 원동기형식표기지움·재표기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
구비서류 표기를 지우거나 새로운 표기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(예시) ○표기체계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수입한 경우 : 수입면장 사본 및 기술검토서 사본 ○교통사고로 표기부위가 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: 사고사실증명서 ○기타사유로 인한 경우 :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류 등			

신청안내

신청하는 곳	교통안전공단(자동차검사소)	처리기간	5일
수수료	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한 금액		
○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표기부호를 배정 받은 제작·조립자 및 교통안전공단외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(「자동차 관리법」 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). -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제5호).			

33331-2911민

210mm×297mm

96.10.4 승인

(일반용지 60g/m²)